

『2023 웹툰산업 육성사업』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공고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는 우수한 지역 웹툰 업체의 글로벌 현지 파트너 발굴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외 전시회(뉴욕코믹콘) 참관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3. 9.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I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2023 웹툰산업 육성사업 해외 전시회(뉴욕코믹콘) 참관 지원사업
- 나. 사업목적: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현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시장 동향파악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적용 기회 모색
- 다. 지원기간: 2023년 10월 중
- 라. 지원규모: 3개사(명) 내외
- 마. 지원내용: 왕복 항공료(참여자당 당 1인), 전시회 참관 및 비즈니스 미팅 지원 등
- 바.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연재(완료) 작품을 보유한 대구 소재 웹툰 기업 또는 창작자
 - ※ 지역 기준: (기업)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소재지, (창작자) 주민등록등본 상 소재지
 - ※ 웹툰 기업: 사업자등록 종목이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 만화(웹툰)콘텐츠 제작, 웹콘텐츠디자인, 출판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시각디자인업, 캐릭터, 디자인, 만화가, 화가 등
- 사.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사업 전반에 참여 제한된 개인 및 사업자(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각종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신청자 및 대표가 대구광역시 및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거나,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 진흥원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참여제한 조치 중인 경우
- 진흥원에 채무가 있거나 민·형사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제작할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진흥원 또는 타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 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공고일 기준 진행 중인 과제가 2개 초과인 경우.(단,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기업만 해당)
- 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 대본(구성안) 저작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본인의 시나리오가 아닐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작품 원고에 과도한 폭력묘사 및 언어 표현, 선정적인 장면(신체 특정 부위 노출 등), 정치적 장면이 포함된 경우
-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붙임3] 신청/참여제한 대상 여부확인서의 '아니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II 전시회 개요

- 가. 전 시 명: 2023 뉴욕 코믹 콘(New York Comic Con) (주최: ReedPOP)
- 나. 개최기간: 2023년 10월 12일(목) ~ 2023년 10월 15일(일) / 총 4일 간
- 다. 개최장소: 미국 뉴욕 재비츠 센터(Javits Center)
- 라. 행사규모: 102개국 참가, 800개사 전시, 15만 명 참관
- 마. 행사소개: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웹툰·코믹스 등 대중문화 콘텐츠) 박람회
- ※ 상세내용 NYCC 공식 홈페이지 참조(<https://www.newyorkcomiccon.com>)

III 세부내용

가. 지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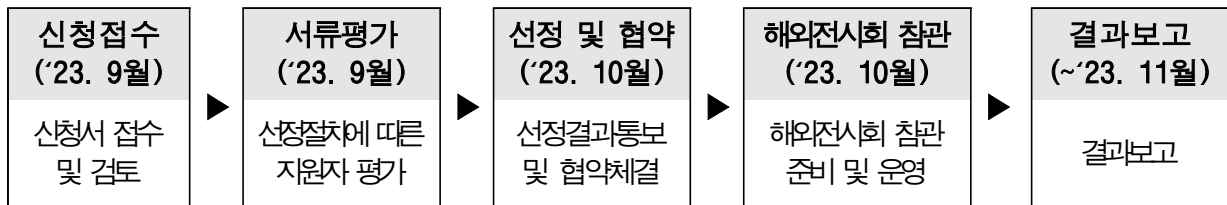
- 1) 한국 ↔ 미국 왕복 비행기 티켓 제공(참여기업 당 1인)
- 2) 2023 뉴욕 코믹콘 참가 티켓 제공(참여기업 당 1인)
※ 전시회 개막일(10.12.) 및 폐막일(10.14.) 티켓 제공하며, 제공내역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3) 글로벌 마켓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현지 업체 비즈니스 미팅 지원
※ 비즈니스 미팅 대상 업체는 선정자 대상 추후 공지하며, 필요 시 비즈니스 통역 지원
- 4) 위 지원사항 외 발생내역 일체 참가자 부담
※ 숙박비, 보험비 등 제반비용 포함한 기타참가 비용 일체

나. 기타사항

- 1) 지원 성과를 포함한 관련 내용은 대구광역시,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사업 홍보 및 프로모션 또는 공공 목적으로 활용 가능
- 2) 지원규모 등 세부내용은 선정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적합 참가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가능
- 3) 지원사항은 추진 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4) 지원 대상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 대본(구성안) 저작권 등을 침해 또는 분쟁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5)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정하는 별도 안내 및 협약 사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선정자가 지원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않거나, 협약 등 필요서류 미제출 시 차순위자 선정 가능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진흥원 요청에 대한 제출자료 미비 시 지원사항 환수 가능

IV 주요일정 및 평가기준

가. 주요일정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평가기준(안)

1)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작품 경쟁력 (15)	- 작품 기획력 및 보유 웹툰의 작품성, 완성도	5
	- 작품 대중성 및 상업성	10
참관 계획 (20)	- 참관 목적의 적절성	5
	- 추진 일정 및 세부 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10
웹툰 성과 (30)	- 국내외 웹툰 서비스 실적 및 주요성과	15
	- 최근 2년간 웹툰 및 2차 저작물 실적	15
해외 진출 가능성 (40)	- NYCC 참관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전략 및 목표 타당성	20
	- 해외시장 진출 적합성 및 적극성	20
합 계		100

※ 상기 평가항목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선정방법 : 신청서류 접수 후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서류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의 사업 중 지원예산 또는 선정 개수 제한으로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사업은 후보사업으로 관리하여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평가 점수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추가선정 가능
- 다수 신청자가 접수하였을 경우, 서류평가 외 선정절차 추가 가능
- 평가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 요청 가능
- 선정평가 절차 진행 후 적합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가능

V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2023. 9. 19.(화) 15시까지

나.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 및 원본 직접 제출(모두 필수)

다. 제출서류(모두 필수 제출)

구 분	작성내용	부 수	제출방식
과제신청	① 참가신청서	각1부	- 사업신청: 담당자 이메일(shk@dip.or.kr) 및 서류 원본 직접 제출(모두 필수) - ⑤ ~ ⑩, ⑬번 서류는 기업인 경우에만 해당 (개인창작자 미해당) - ① ~ ⑭번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날인필수) - ①번 사업신청서의 경우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 ① ~ ⑤ 번 파일은 가급적 PDF로 하나의 파일로 합한 후 제출 ※ 파일이름은 '지원유형명_기업명' 으로 변경 후 제출 ※ 공고기간 내 발급본 제출 필수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확인서		
	④ 협약서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⑥ 참여인력의 4대보험 가입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부)		
	⑦ (21년/22년) 2개년 기업 재무제표 ※ 22년 재무제표는 기업 상황에 따라 기결산재무제표 제출이 가능하나 회계기관(사)의 인증이 있어야 함		
	⑧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⑨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⑪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⑫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용 시)		
	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⑭ 기타 증빙자료 (해당 시)		
협약체결	① 수정사업계획서 등 부속서류 등	각1부	선정기업 별도 안내

※ 반드시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숙지 후 작성

※ 평가 등 선정 과정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숙지 후 작성하되, 반드시 적시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라. 서류제출 및 문의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76, 5층(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

콘텐츠진흥본부 게임웹툰센터 김수현 전임(T. 053-215-4918 / E. shk@dip.or.kr)

※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기한 준수 요망, 제출기한 초과 시 접수 불가

VI

유의사항

가. 신청/접수

- 1) 신청자는 반드시 공고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 제출
- 2)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사업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3)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하며, 일제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4) 제출한 서류 중 자필서명 및 인감을 날인해야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나. 검토/선정

- 1) 서류적정성 검토에 따라 접수 서류 불충분 및 허위사실 기재 발견 시 선정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 선정평가의 최종점수는 평가위원별 산술평균점수 기준으로 하며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3)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4) 선정 후 고지하는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취소 될 수 있으며, 평가점수 차순위자 선정할 수 있음

다. 과제수행

- 1) 진흥원과 선정자 간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2) 진흥원은 과제 진행사항 수시점검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라. 성과제출

- 1) 선정자는 진흥원의 제출 요청 통지일 내 성과를 제출하여야 함
- 2) 저작권은 선정자에 귀속되며(단, 공동저작 시 세부사항은 저작자 간 합의로 결정) 필요 시 진흥원 사업홍보 또는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3) 지원 대상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 대본(구성안) 저작권 등을 침해 또는 분쟁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선정자에게 있음
- 4) 선정자는 성과 보고 자료를 진흥원이 요청하는 양식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미 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 시 진흥원은 선정자에 지급된 지원내역에 상응하는 비용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기타사항

- 1)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 본 사업의 지원 내용은 일체 지원 과제 수행에 필요한 내역으로 사용되어야 함
 - 3)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4) 본 사업의 신청, 수행에 있어 안내사항, 수행규칙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임
- ※ 공고에 미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름
- 5)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가능함
 - 6) 협약 후 지원이 기진행된 경우에도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불이행, 성과결과 미제출 또는 결과 미흡, 지원사항 부당 사용 등 결격 사유 확인 시 지원에 상응하는 비용을 전액 환수 조치하며, 향후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공모전 및 각종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7)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 주체의 장은 필요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 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8) 관리기관의 요청 시 성과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내역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원내역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 가능
 - 9)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지원이력 정보 등의 수집·조회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10) 선정자는 진흥원에서 공지한 기간 내 실적보고를 완료해야함
 - 12) 지원 성과에 대해 대구시 및 우리원에서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13) 지원기관이 사업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 소요 비용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14)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선정과제의 장은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15) 타 기관으로 과제 중복지원이 발견될 경우 과제 탈락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16)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를 추진함
- 17) 코로나19 등 행사상황 및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상기 지원내용 변동가능
- 18) 제출 기한 초과된 신청서 및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접수 불가함
- 19) 제출된 신청서는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20)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21) 자회사를 통한 중복지원 및 사업자가 동일한 법인의 중복지원 불가함
- 22) 선정결과는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하며, 상기 공고내용은 일부 변동가능함
- 23) 참가 확정 후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참가제한 받을 수 있음

VII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가. 지원대상: 공통사항 및 지원유형별 지원대상 참고

1) 지원대상 조정 및 확정

- 선정자 대상 관련 증빙 자료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증빙자료 바탕으로 사업내용 조정 및 수행계획서 확정 후 협약 체결
-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주체가 사업을 목적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에 소요된 지원비용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참가 인력은 대구 근무지에 근무 중인 대구 및 대구 인근 주소지 인력에 한하여 인정 가능

3) 수행관리

-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수행주체는 서면보고, 대면보고, 평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발표 의무가 있으며 성실히 이행 필요
- 수행주체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주체는 관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 및 평가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주요사항 및 예산변경, 과제변경 등 관리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승인/통보에 따라 진행해야 함
- 관련 진흥원 행사 참석 요청 시 협조 필수
- 기타 관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과 사업추진 관련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사업 후속관리

- 관리기관은 사업종료 이후 3년간 연 1회 수행주체에 대한 실적 성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주체는 제출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재조치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8조(협약 위반 등 문제사업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참고]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끝.

참고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 일반 기준

- 문제사업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 출연금 환수는 문제사업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지원금이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 동일 사업에서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하고, 지원금 환수는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 문제사업의 지원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 위반행위의 경중과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사례별 기준

- 수행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사업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지원 중단 또는 협약이 해약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사업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 제한 확정되어 사업이 협약 해약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수행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사업으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	
○ 수행사업의 목표 달성 미흡 등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해당자 1년	-	

- 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 의무 위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 수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여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지급된 지원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된 경우	경고 조치	-	미제출 대상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이내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이내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 연구개발 성격의 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당해연도까지의 지원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 등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1년	-	

-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		해당자 2년	정산대상기간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생파산의 경우	해당자 1년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 이내에 1회에 한함)	
	-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면제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